

국제신용장관습간의 효력관계에 관한 비교검토*

서 정 두**

-
- I. 서 언
 - II. 국제상관습으로서 신용장관습
 - III. UCP 600과 ISBP간의 상호관계
 - IV. UCP 600과 기타 법규간의 적용
 - V. 결 언
-

I. 서 언

국제거래는 각국의 주권적 간섭과 법적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거래에서 보다 상관습이 더욱 존중되고 있다. 상관습은 어느 시점에서 보면 고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일이 지나는 동안에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다. 당사자간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호원대학교 교내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부 교수.

에 어느 상관습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그 의견이 불일치할 때에는 기대하였던 거래가 실현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분쟁도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거래의 안전과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일찍이 ICC 등 국제기구에서 INCOTERMS나 UCP, ISBP 등의 국제통일규칙 내지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해석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특히 UCP 600에 의거한 신용장의 경우 이 규칙의 특성상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은 물품의 하자 등에 기인한 클레임이 발생하더라도 정히 지급·인수·매입하여야 한다.¹⁾ 이는 신용장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UCP 600의 효력이 절대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상관습의 개념과 적용 우선순위 및 신용장관습의 발달단계를 알아보고, UCP 600의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ISBP 2007 등 국제표준은행관습의 효력관계, 국제보증규칙(ISP98)과 관련법규, 최근 발효된 URR 725, eUCP 1.1 및 미국 UCC 등 주요국법의 상호적용 등에 관하여 비교 검토함으로써, 신용장 실무가들에게 준거규범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국제상관습으로서 신용장관습

1. 상관습의 범위와 적용

① “관습”(customs)이라 함은 특정의 지역이나 특정의 직업 내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오랜 동안 반복된 행위에 의하여 생겨난 전통적인 행위양식으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승인된 것을 말한다. 관습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것이 “오랜 동안 확립되어 있거나” 또는 “오래 된” 것이어야 한다.²⁾

특정의 집단에서 관습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발생·합

1) Walter Baker and John F. Dolan, *Users' Handbook for Documentary Credits under UCP 600*, ICC Publication No. 694, 2008, pp. 56-57.

2)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nd ed., Kluwer Law & Taxation Publishers, 1991, p. 176.

의 또는 확립되고, 법적효력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으면서, 또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관습은 법률이나 판례에 의해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단계에 이르면, 곧 “관습법”(customary law)으로 정착된다.

특히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승인하고 준수하는 전통적인 거래양식을 “상관습”(mercantile customs)이라고 하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되고 준수될 때 이를 “국제상관습” 또는 “무역관습”이라고 한다. 국제상관습은 ICC와 같은 민간차원의 국제기구에서 통일규칙 등으로 제정되어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를 국제거래의 준거규범으로 채택케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매매관련의 INCOTERMS, 결제관련의 UCP, eUCP, ISBP, URR, URC 등이 그것이다.

“관습”과 동일한 시각에서 “관행” 또는 “관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관습의 형성단계와 범위를 논하고자 편의상 영어의 “customs”는 관습, “usage”는 관행, “practice”는 관례로 각각 옮겨 두고자 한다.³⁾

② “관행”(usage)이라고 하면 이는 사례분별력이 있는 일반인이 계약당사자와 동일한 입장에 처할 경우 그 계약에 당연히 적용할 것으로 기대할 정도까지 확립되어 있는 거래의 관례 또는 방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미국 UCC에도 관행에 대하여 “특정의 거래에 있어서 준수될 것이라는 기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지역, 업종 또는 거래에 있어서 그러한 준수의 정규성을 갖고 있는 거래의 모든 관례 또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한 관행의 존재와 범위는 사실로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제1-205조 2항)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서 관행이 당사자들의 계약과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위하여는, 이를 “당사자들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며”, 또 “국제무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특정의 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당사자들에 의하여 정규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CISG 제9조 2항).

③ “관례”(practice)라 함은 계약의 양 당사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어떠한 행위(conduct)나 거래의 과정(course of dealing)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때에 확립되어진다.⁴⁾

3) 서정두, “신용장거래에서의 일치성판단에 관한 ‘표준관습’의 해석”, 『무역상무연구』 제11권, 1998. 2, pp. 339-342.

4) C.M. Bianca and M.J. 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è · Milan, 1987, pp. 106-107.

요컨대 i) 특정의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행위나 거래의 과정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되어 있는 것을 “관례”라고 한다면, ii) 당사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고 특정의 거래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정의 거래에 관련된 종류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행위양식을 “관행”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나아가 iii) 특정의 지역, 직업 내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오랜 동안 반복된 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하나의 사회규범으로서 발생·합의 또는 확립되어 있고, 법적효력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으면서, 또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전통적인 행위양식의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간에 이러한 관례, 관행 또는 관습의 선택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관례, 거래의 관행 또는 관습은 그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호 모순되지 아니하게 해석되어야 하며(CISG 제8조 3항). 이러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 i)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은 관례나 거래의 관행보다 우선하며, 또 ii) 관례는 거래의 관행이나 관습보다 우선한다.⁵⁾

다만 국제무역의 특수성 때문에 가장 우선하는 당사자간의 합의, 즉 당사자 자치(autonomy)의 원칙이나 상관습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이에 관계된 주권국가가 인정하는 특정의 법질서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국제거래에 대한 규범적용 우선순위는 국제적·주권적 강행규정>당사자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내용>관례·관행·관습 등의 상관습과 관습법>상사·민사법상의 임의규정⁶⁾ 등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관습”이라고 하면, 이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관례, 관행 및 협의의 관습(customs) 등이 담고 있는 모든 의미를 함축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하 본고에서는 그 협의의 개념보다는 법 이전의 포괄적인 개념에서 “관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5) Albert H. Kritzer,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0, p. 129; UCC Sec. 1-205 (4).

6)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민법 제106조).

2. 신용장관습의 국제적 발달

신용장거래에서도 당사자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내용이 지역적·국제적 상관습으로 발달된다. 신용장관습의 범위를 발달과정에 따라 “비공식적 관습”(informal customs)과 “공식적 관습”(formal customs)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신용장거래의 비공식적 관습

“비공식적 관습”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또는 거래조건의 해석에 의하여 입증되는 상인들의 반복된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속하는 관습에는 상인들의 반복된 행위(conduct)뿐만 아니라, 거래의 양식(form)과 관행(usage) 등이 있다.⁷⁾ 비공식적 관습이 형성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반복된 행위”이다. 신용장거래에서 행위요건이라고 하면, 이는 특정의 상행위에 해당하는 신용장의 개설, 통지, 제시, 매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 이러한 행위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상업사회에 속하고 있을 때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 비공식적 관습으로서 “반복된 행위”나 “거래의 과정”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관행”(usage)이다. 거래의 관행으로서 형성되기 위하여는 특정 거래의 당사자 사이에서의 정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일정한 상업사회에 있어서도 정규성을 가질 수 있는 특정한 상행위이어야 한다.

신용장거래에 적용할 공식적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가장 가까운 특정의 관행, 거래의 과정, 거래의 조건 등 비공식적 관습이 존중되어야 한다.

(2) 신용장거래의 공식적 관습

“공식적 관습”이라 함은 상인들의 오랜 동안 반복된 행위에 의하여 그것이 하나의 국제적인 통일규범으로서 발생·합의 또는 확립되어 있고, 또 법적효력을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행위양식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관습에는 국제기구인 ICC에 의한 UCP, eUCP, ISBP, URR 등이 있다.

특히 UCP는 1933년에 제정된 후 시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모두 6차례 개

7) Boris Kozolchyk,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 1976, pp. 75~76.

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과정을 보더라도 각국의 은행가들로부터 제기된 의견과 그들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ICC 은행위원회에서 수 차례의 회의와 의견조정작업을 거쳐 공식적 국제관습으로 정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지 UCP는 신용장의 관습 내지 관례들을 민간기구인 ICC가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공식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정부차원의 조약이나 각국이 채택·제정한 관습법 수준의 강행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 내지는 거래조건의 해석에 따라 적용되는 임의규범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상에 UCP에 관한 명시적인 준거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은 그 반대의 법령이나 법정지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UCP 600 제1조). 반면 UCP 적용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은 상대방이 UCP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알았으며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만 관련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Ⅲ. UCP 600과 ISBP간의 상호관계

1. UCP 600의 적용범위

UCP 600 제1조에는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구 규칙의 원칙을 계승하고 있으며, 단서로서 신용장상에 “이 규칙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경우 기타 별도의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이 규칙의 명시적인 수정이나 배제가 없는 한, 구속력을 갖도록 개정된 것이 구 규칙과 다른 점이다.

(1) UCP 600과 화환신용장

UCP 600은 기본적으로 모든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장상에 이 규칙에 따른다는 준거문언, 예컨대 “Subject to UCP 600” 등의 명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UCP 규정의 명시적인 수정이나 배제가 없는 한, 이 규칙은 관계당사자들을 구속한다.

특히 UCP 600이 적용되는 신용장의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서류심

사에 관한 ISBP 등 국제표준은행관습이 자동으로 적용되며(동 제14조 d항), 또 별도의 명시가 있으면 URR(은행간 보상규칙)도 적용된다(동 제13조 a항).

심지어 각국의 법원에서는 신용장상에 UCP에 관한 준거문언이 있든 없든 우선적으로 UCP 규정을 준용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UCP가 범세계적으로 승인·활용되는 가장 보편화된 관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UCP는 모든 화환신용장에 강제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UCP 600 제1조의 단서 “신용장에 의한 명시적인 수정 또는 배제가 없는 한” (unless expressly modified or excluded by the credit)에서 보듯이 신용장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UCP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⁸⁾

또 당사자들은 다른 종류의 규칙이나 법률을 선택하거나, UCP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준거법을 추가로 명시할 수 있다(ICC Pub. 632, Rs. 4 to 5). 대표적으로 미국 신용장법(UCC 제5편)을 들 수 있다. 다만 UCC에서도 신용장이 UCP를 전제하는 한, UCP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동 제5-116조 c항).

(2) UCP 600과 보증신용장

UCP 600은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에도 적용할 수 있다. UCP는 전체가 보증신용장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화환신용장을 전제한 송장, 운송·보험서류, 양도신용장 등의 조항은 부적합하지만, 신용장의 일반원칙, 은행의 의무와 면책, 잡칙, 양도 등은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보증신용장상에 UCP 준거문언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보증신용장의 경우 UCP 준거문언이 있는 한, 취소불능성의 기재가 없더라도 동 제4조(구 제6조 c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불능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개설은행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ICC Pub. 489, Case No. 168). 또 상품거래시 UCP 준거문언이 있는 보증신용장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은행은 요구된 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ICC Pub. 632, R. 3).

그러나 UCP 준거문언이 지급보증서(payment guarantees) 등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UCP를 적용하려면 보증신용장의 표제가 바람

8) ICC, *Commentary on UCP 600*, Publication No. 680, 2007, p. 12.

직하며(ICC Pub. 459, Case No. 1), 지급보증서에는 오히려 ICC의 “URCG” (계약보증 통일규칙) 등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Ibid., Case No. 2).

(3) UCP 600과 전자신용장

UCP 600은 별도의 명시규정은 없으나 EDI(전자자료교환), SWIFT(세계은행간 금융전신망) 등에 의한 모든 방식의 전자신용장(electronic credit)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SWIFT 신용장의 경우 SWIFT 업무규약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그 개설할 당시에 유효한 UCP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Ch. 4, MT 700 and 701). 따라서 SWIFT 신용장은 UCP 준거문언이 없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설당시에 유효한 UCP의 적용을 받는다(ICC Pub. 434, R. 101 and Pub. 632, Rs. 1 and 14; 대판 2003.1.24.선고, 2001다 68266).

특히 UCP의 전자식 제시보칙(“eUCP”)에 따른 eUCP 신용장의 경우,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이에 UCP 600을 적용할 수 있다(eUCP 제e2조 a항). 다만 두 규칙이 모순될 경우 eUCP 규정이 우선하며, 또 종이서류만 제시될 경우에는 이에 UCP 600을 단독으로 적용할 수 있다(동조 b항과 c항)(후술함).

2. UCP 600과 ISBP의 관계

UCP 600 제14조 d항에는 “서류상의 자료는 신용장, 서류 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습⁹⁾(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의 상호관계에서 판단할 때, 반드시 당해 서류, 기타 모든 규정된 서류나 동 신용장상의 자료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결코 모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국제표준은행관습’의 범위

UCP 600에서 국제표준은행관습이라고 하면, 이는 ICC 출판물 제681호의 “ISBP”뿐만 아니라, 이에 조문화되지 못한 산업계의 추가적인 표준관습이나

9) “practice”란 용어는 항간의 “관행”보다는 “관례”로 옮겨야 정확하지만, 관습·관행·관례 등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관습”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본다.

서류심사자들의 일상관습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ICC Pub. 680, p. 64).

즉, “국제표준은행관습”이라 함은 i)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고, ii) “은행관습”을 그 표준으로 삼으며, iii) UCP상에 반영된 관습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에 조문화되지 아니한 수많은 국제은행관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¹⁰⁾

요컨대 국제표준은행관습을 구성하는 자료에는 i) 현행 UCP와 ISBP 본문, ii) UCP를 해설한 ICC 출판물,¹¹⁾ iii)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과 판정 및 이를 분석한 사례집,¹²⁾ iv) ICC와 제휴한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의견과 판정 및 출판물,¹³⁾ v) ICC 신용장분쟁 전문가그룹(DOCDEX)의 판정과 신용장법에 관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논문자료 등이 있다. 다만 UCP가 지향하는 국제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한 국내 또는 지역관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¹⁴⁾

(2) UCP 600과 ISBP의 관계

ICC 출판물 제681호의 “ISBP”(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라 함은 UCP 600의 적용에 관한 실무상의 보완서로서,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2002년 10월에 제정되고 2007년 4월에 개선 배포된 ‘화환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말한다.¹⁵⁾

ISBP는 UCP의 효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UCP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ISBP는 UCP의 부칙이나 해석서 또는 개정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UCP 600 제14조 d항 등에

10) Joseph D. Gustavus,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1 (1997), p. 62.

11) ICC, *Commentary on UCP 600*, Pub. No. 680 (2007) 등이 이에 해당한다.

12)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on UCP 500*, Pub. No. 632; *Banking Commission Unpublished Opinions (1995-2004)*, Pub. No. 660 등이 해당한다.

13) 대표적으로 미주의 IFSA가 발행하는 “White Books”이 이에 해당하는 출판물이다.

14) ICC, *Collected DOCDEX Decisions (1997-2003)*, Pub. No. 665; James E. Byrne, “UCP 500 Explored: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 - Standard Banking Practic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7 No. 6 (1991), p. 12.

15)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Pub. No. 645, 2003. 1, p. 3 and Pub. No. 681, 2007. 6, p. 3.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조문화하는데 기본취지를 두고 있다.

ISBP는 UCP 600의 규정과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이나 판정과도 일관성이 있다. 이는 UCP 600에 규정된 일반원칙과 신용장 실무자들의 일상업무 사이에 부족한 공백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ISBP와 UCP 600은 전체를 하나의 규칙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별개로 이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는 이와 다른 관습을 강제하는 예가 있으나, ISBP가 해당국가의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신용장상에 이를 삽입하지 아니하여도 UCP 600과 함께 신용장거래의 일상업무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¹⁶⁾

ISBP는 정부가 이를 채택하여 적용되는 강행법규도 아니고, 신용장상에 준저조항을 두어 적용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는 UCP 600에 의거한 신용장거래의 국제표준관습으로서 UNPAID 전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주고 있다.

(3) ISBP의 제정 및 개정내용

ICC 은행위원회는 2000년 5월에 미국의 Donald R. Smith와 덴마크의 Ole Malmqvist를 공동의장으로 한 10명의 ISBP 제정작업부를 설치하고, 동 작업부는 45개국의 ICC 국내위원회 자료, ICC 은행위원회의 Opinions, Decisions, Position Papers, DOCDEX 판정 등의 자료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였다.

“ISBP 2002”의 최종본은 2002년 10월 30일 ICC 은행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을 득하고 200개 조항의 “ICC 출판물 제645호”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2003년 1월 1일부터 각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었다.¹⁷⁾

한편 ISBP가 2002년에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후에도 그 적용에 관한 UCP 500과의 명확한 관계가 설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 10월에 ICC 총회에서 UCP 600이 승인되고 2007년 7월 1일부터 UCP 600이 적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ISBP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¹⁸⁾

16) Donald R. Smith,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p. 1; *ibid.*, Pub. No. 681, 2007. 6, p. 12.

17) 이하 본고에서는 신·구 ISBP를 구분하기 위하여 연도를 기준으로 제정본을 “ISBP 2002”(ICC Pub. No. 645), 개정본을 “ISBP 2007”(ICC Pub. No. 681)이라 칭한다.

18) Ron Kats, “Editor’s Note, ISBP 681 approved unanimously”, *ICC DCINSIGHT*, Vol. 13, No. 3, 2007. 7-9, p. 2; Haluk Erdemol, “A Summary of the Updated ISBP”, *Insights into UCP 600*, ed. by Ron Katz, ICC Publication No. 682, 2008, p. 263.

ICC 은행위원회의 초안그룹은 “ISBP 2002”를 재검토하고 19개국에서 도착된 논평을 기초로 185개 조항의 “ISBP 2007” 초안을 마련하였다.¹⁹⁾ 동 작업부는 일상생활의 기준에서 통상적인 제시조건과 가장 빈번하게 제시된 서류를 커버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UCP 600과 일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ISBP 2007 초안은 2007년 4월 26일에 ICC 은행위원회의 싱가포르 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승인을 득하고 “ICC 출판물 제681호”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2007년 7월 1일부터 UCP 600과 동시에 적용하도록 배포되었다.

ISBP 2007의 내용은 대부분 ISBP 2002에서 변경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은 ISBP의 개정에 반대되는 개선본(updated version)이란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변화는 이루어졌다.²⁰⁾ 즉, ① 본질적인 원칙이 UCP 600 본문 상에 삽입된 것은 ISBP로부터 조항을 삭제하였다. ② UCP 500에 관한 조항참조를 UCP 600의 조항으로 대체하였다. ③ 사례의 일자를 (2006년 내지 2007년) 수정하였다. ④ UCP 600 문언과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문언을 변경하였다.

(4) ‘국제표준관습’의 최종판단

특정의 거래관습이 국제표준은행관습에 속하는 것인지, 그리고 서류심사에서 국제표준은행관습이 준수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UCP 상에도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ICC는 그 최종판단을 은행실무가들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정의 행위가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본다. 즉,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률의 문제(matter of law)로 남는다.²¹⁾

결국 신용장 사건에 임하는 법원의 판단도 앞서 언급한 국제거래의 규범적용 우선순위를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즉, 법원은 주권국가가 인정하는 특정의 강행규정과 국제조약이나 협정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19) ISBP 개정작업을 맡은 UCP 600 초안그룹은 영국의 Gary Collyer(ABN 암로은행, ICC 은행기술실무위원회 기술고문)를 의장으로 하여 1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20) Guy Sebban, *Foreword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CC Pub, No. 681, 2007. 6, p. 3.

21) James E. Byrne, “Revised UCC Section 5-108 (e) : A Constitutional Nudge to Court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1997), p. 422.

우선으로 적용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이 없을 경우 공식규범인 UCP, ISBP 등의 관련규정과 기타 비공식적 국제관습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²²⁾

IV. UCP 600과 기타 법규간의 적용

1. UCP 600과 보증규칙 관계

(1) UCP 600과 ISP98의 관계

UCP 600은 적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증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장상에 UCP 준거문언이 있어야 한다(제1조). UCP 600 개정시 보증신용장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ISP98보다 UCP에 준거한 보증신용장이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존치하기로 결정하였다.²³⁾

그러나 UCP 600은 간단한 보증신용장에는 적용할 수 있겠으나, 동 제1조에서 인정한 것처럼 모든 보증신용장에 완전히 적용할 수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보증신용장의 경우 UCP 상에 규정이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²⁴⁾

“ISP98”(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 국제보증규칙)은 스타일과 접근방법에서 앞의 UCP 600과 다르다. 왜냐하면 보증신용장은 물품·서비스의 대금결제를 위한 상업신용장과 달리 계약불이행, 대출금·선급금 지급불이행, 사건의 발생이나 미발생에 대한 대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ISP98은 1998년 4월 6일 ICC 은행위원회가 승인한 후 1999년 1월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내용은 크게 ① 총칙, ② 의무, ③ 제시, ④ 심사, ⑤ 통지·권리상실·서류의 처리, ⑥ 양도·대금의 양도·법률에 의한 자동 양도, ⑦ 취소, ⑧ 대금보상의무, ⑨ 기산, ⑩ 공동발행과 분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John F. Dolan,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1994 cumulative supplement 1*, Warren · Gorham & Lamont, p. S4.13.

23) ICC, *Commentary on UCP 600*, Publication No. 680, 2007, p. 12.

24) ICC,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ISP98)*, Publication No. 590, 1998, Informational Note.

한편 ISP98은 UCP 600과 일관된 측면도 많다. 즉, 보증신용장과 상업신용장의 기본관습은 같으며, ISP98과 UCP 600은 본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ISP98은 보증신용장(계약이행·금융·직접지급 보증신용장 포함)에만 적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다만 보증신용장 등의 확약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이 규칙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제1.01조 a항과 b항).

반대로 ISP98에 따른 확약에서도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며(제1.01조 c항), 이 규칙은 적용 가능한 법률이 금지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동 준거법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ISP98은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기타 모든 상충되는 실무규칙보다 우선한다(제1.02조 a항과 b항).

(2) UCP 600과 유엔보증협약

“유엔보증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독립적 보증서와 보증신용장에 관한 유엔협약)은 UNCITRAL이 1990년부터 6년간의 실무작업을 거쳐 1995년 12월 11일에 총 29개조로 제정·공표한 것으로서, 이는 국제적으로 보증신용장의 이용을 확대하고 각국에 이에 관한 모델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²⁵⁾

UCP 600은 이를 보증신용장에 적용하려면 준거문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1조), 유엔보증협약은 그 적용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제1조).

① 적용대상은 협약 제2조에 정의된 국제적 확약이어야 한다. 즉, 국제관습상 “독립적 보증서나 보증신용장”으로 알려져 있는 확약으로서, 어떠한 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확약의 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보증인/개설인의 독립적인 약속이어야 하며(제2조 1항), 또 이것이 관계당사자(영업소)간에 국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제4조 1항과 2항).

② 확약의 보증인/개설인의 영업소는 이 협약의 체약국내에 있어야 한다(제1조 1항 a호). 즉, 이 협약은 2008년 1월 현재 미국 등 8개국이 가입하였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개설되는 확약에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가입국

25) B. Wunnicke, D.B. Wunnicke and P.S. Turner,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2nd ed., John Wiley & Sons, Inc., 1996, pp. 151~152. 이 협약은 2000년 1월 1일에 발효되어 2008년 1월 현재 벨라루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가봉, 쿠웨이트, 라이베리아, 파나마, 튀니지, 미국 등 8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이지만, 이들 계약국에서 개설되어 온 확약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이 협약은 확약의 보증인/개설인이 비계약국내에 있더라도,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계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동조 1항 b호). 예컨대 법정지법(*lex fori*)의 국제사법의 규정이 어느 계약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간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협약은 당사자간의 확약에서 협약 전체의 적용배제에 관한 합의가 없어야만 그 확약에 적용이 가능하다(제1조 1항 단서). 물론 이 협약에 관하여는 일부 규정의 효력변경 등 어떠한 유보도 행할 수 없다(제27조).

④ 이 협약은 또한 국제적인 신용장상에 명시적으로 이 협약에 따른다는 준거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제2조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신용장에도 이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제1조 2항). 이는 UCP 600의 입장과 같다.

⑤ 준거법에 관한 협약 제21조와 제22조의 규정은 동 제1조 1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제2조에 정의된 국제적인 확약에 적용된다(제1조 3항). 즉, 준거법에 관하여 확약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확약의 조건으로 증명된 법률 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택된 준거법을 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제21조). 준거법을 선택할 수 없는 때에는, 확약을 개설한 영업소의 국가의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제22조).

(3) UCP 600과 URDG 관계

“URDG”(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요구불보증 통일규칙)는 ICC 은행위원회와 국제상관습위원회가 함께 구성한 공동작업부와 초안그룹에 의하여 1991년 10월에 확정되고, 동년 12월 ICC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1992년 4월 “ICC 출판물 제458호”로 발표된 것으로서, 이는 1978년에 제정된 ICC의 “URCG”(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s : 계약보증 통일규칙)로는 한계가 있었던 요구불보증 등에 관한 국제은행관습의 통일규칙이다.²⁶⁾

“요구불보증”이란 일정금액의 지급확약으로서, 지급청구서와 기타 보증서에 명시된 서류(있을 경우)가 보증기간 내에 여타 보증조건에 일치하게 보증인에

26) 오원석·허해관·김중년 역(Roy Goode 저),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두남, 2008, p. 23. 상기 URDG는 2007년 5월부터 ICC 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게 제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서면의 확약을 말하며(제2조 a항), 그 법적성질은 보증신용장처럼 독립·추상성, 서류의 문면상 일치성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요구불보증서와 보증신용장은 법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으며, 단지 비즈니스상 용어의 차이가 있고 후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URDG는 보증인이 지시를 받아 개설하는 요구불보증과 그 변경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확약에 적용되며, 이에 보증서나 변경서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제1조). URDG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은 ① 제2조에 정의된 요구불보증이어야 하고, ② 타인의 지시를 받아 개설한 것이어야 하고, ③ 이 규칙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어야 한다. 기타 URDG는 제2조에 정의된 역보증(counter-guarantee)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즉, URDG는 이 규칙의 준거문언이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UCP 600의 입장과 같다. 따라서 보증서의 개설지시는 명확하고 정확하여야 하며(제3조), 당사자들은 준거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내에서 URDG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제1조 단서). URDG는 사기(fraud)나 권리남용 등을 이유로 한 지급금지명령의 청구 등 국내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사항은 제외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규율될 수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URDG가 적용되는 요구불보증도 다른 계약에서처럼 그 준거법과 법정지법에 의한 강행규정과 공서양속에 반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정지법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해당국의 강행규정과 공서양속은 URDG가 적용되는 요구불보증에 우선적인 효력을 갖는다(제27조).

2. UCP 600과 URR 725 관계

(1) UCP 600의 대금보상규정

UCP 600 제13조 a항에는 화환신용장의 대금보상에 관하여 “신용장에서 지정은행이 별도의 보상은행 앞으로 대금보상을 청구하도록 기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용장의 개설당시에 유효한 ICC 은행간 대금보상규칙(URR)에 따르는지의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신용장상에는 최근 발효된 URR 725를 삽입하는 정도보다 “이에 따른다”는 기재를 두어야 한다.

한편 UCP 600 동조 b항과 c항에는 신용장상에 ICC 은행간 보상규칙에 따

른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의 대금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개설은행은 보상청구의 유효기일을 두지 말고 보상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상에 기재된 사용가능성에 적합한 보상수권을 제공하여야 한다(제b항 i호).

② 청구은행은 결코 보상은행에게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compliance)에 관한 증명서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비록 보상은행이 그러한 일치성의 증명서를 받도록 요구되어 있더라도 이는 무시되어야 한다(제b항 ii호).

③ 보상은행이 최초의 청구시 신용장조건에 따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은행은 청구은행의 모든 지출금과 이자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제b항 iii호).

④ 보상은행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개설은행의 부담에 속한다. 다만 보상은행의 경비를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고자 할 경우, 개설은행은 신용장과 보상수권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동 경비가 수익자의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이는 청구은행에게 보상금액을 지불할 때에 공제하여야 한다. 보상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상은행의 경비는 개설은행의 의무로 남는다(제b항 iv호).

⑤ 보상은행이 최초의 청구시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설은행은 최종적으로 청구은행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 물론 청구은행의 경비를 수익자로부터 공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경비도 부담하여야 한다(제c항).

(2) URR 725 개정내용과 적용

신용장의 대금보상관습은 매우 복잡하고 특이하여 각국의 은행간 대금결제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빈번하였다. 국제적으로 UCP 600에 근거규정을 두었으나(제13조),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일규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ICC 은행위원회는 1993년 3월부터 작업부를 구성하고, 1995년 5월에 총 17개 조항의 “URR 525”(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 은행간 화환신용장 대금보상 통일규칙)를 완성하였으며, 이 규칙은 1995년 9월 26일에 IC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동년 11월에 ICC 출판물 제525호로 출간되고 1996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URR 525는 현행 UCP 600 체제에 맞도록 기술적인 변화를 기해 “URR 725”로 개정되었다. 개정규칙은 2008년 4월에 ICC 은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동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내용은 종전과 같이 총칙과 정의, 의무와 책임, 수권·변경·청구의 형식과 통지, 잡칙 등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URR 725는 ① 전체적으로 용어를 소문자로 수정하여 UCP 600과 조화를 이루고, ② 지급·연지급·인수를 “수리”(honour)로 통일하고(제2조 e항), ③ 전신에 의한 보상수권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제6조 a항), ④ 자유매입 신용장을 “모든 은행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장”으로 수정하고(제6조 d항, 제8조 b항), ⑤ 보상은행의 수리의무를 강화하고(제9조 g항), ⑥ 물품·서비스 명세를 채무이행에까지 확대하고(제10조 b항), ⑦ 유보조건이나 하자보상조건부(L/I)의 매입조항을 삭제하고(제10조 c항, 제11조 e항), ⑧ 송달에 관한 면책조항을 UCP 600과 일치하게 재정리하고(제14조), ⑨ 불가항력의 면책범위에 폭력행위(terrorism)를 추가하고(제15조), ⑩ 다른 당사자에 의한 보상경비조항을 수익자로 구체화하여 내용을 간결하게 재정리한 것이 특징이다(제16조 a항, c항).

따라서 UCP 600에 의거한 신용장이 별도의 보상은행을 들 경우, 반드시 현재에 유효한 URR 725에 따르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제13조 a항).

또 URR 725 제1조에는 “보상수권의 본문에서 이 규칙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의 모든 은행간 대금보상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⁷⁾ 즉, 개설은행은 신용장뿐만 아니라 보상수권의 본문상에 이 규칙을 삽입하는 정도보다는 대금보상이 이 규칙에 따른다는 준거문언을 명기할 책임이 있다.

결국 URR 725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용장 및 보상수권상에 “Subject to URR 725”라는 등의 준거문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이 규칙의 명시적인 수정이나 배제가 없는 한,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이 규칙은 UCP 600에 우선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제1조 3문단).

27) ICC,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525, 1995, p. 9 and Publication No. 725, 2008, p. 1.

3. UCP 600과 eUCP 1.1 관계

(1) eUCP 1.1 개정배경과 특징

최근 전자서류에 의한 신용장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의 UCP가 종이서류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자거래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전자신용장 통일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ICC 은행위원회는 2000년 5월에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자신용장의 거래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부를 설치하였다. 동 작업부는 18개월의 집중된 연구를 거쳐 총 12개 조항의 “eUCP 1.0” (Supplement to UCP 500 for Electronic Presentation : UCP 500 전자식 제시를 위한 보칙)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2001년 11월에 ICC 은행위원회의 최종안으로 채택되고 ICC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²⁸⁾

그 후 UCP 600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ICC 국내위원들로부터 eUCP의 특수한 관행 때문에 eUCP가 UCP의 보칙으로서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eUCP 1.0은 단지 용어와 문체에 관련하여 UCP 600의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는 정도로 개선되어 “eUCP 1.1”로 UCP 600과 함께 발표되었다.

eUCP 1.1은 UCP 600에 특정되어 있으며, 필요성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이를 개정하고 후속적인 규칙번호를 붙여나갈 수 있게 발행되어 있다.²⁹⁾

eUCP 1.1의 모든 조항은 특별히 전자식 제시에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 UCP 600에 일치되어 있다. 다만 UCP 조항과 eUCP 조항간의 혼란을 피하고자, eUCP 조항은 각 조항번호 앞에 “e”를 붙여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³⁰⁾

결국 eUCP 1.1은 종이서류와 대등한 전자식 제시를 수용하고자, UCP 600과 함께 이에 필요한 보충적인 규칙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eUCP 1.1은 전자식 제시에 필요한 특정의 기술이나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다루지 아

28) ICC, *UCP 500 + eUCP*, Publication No. 500/2, 2002, p. 53.

29) Ake Nilson, “In Support of Electronic UCP Revisions”, *Insights into UCP 600*, ed. by Ron Katz, ICC Publication No. 682, 2008, p. 99.

30) ICC,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 1.1*, Publication No. 600, 2006, p. 51.

니하였다. 따라서 eUCP의 요건에 일치하는 전자기록의 제시를 위한 기술이나 시스템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은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

(2) eUCP 1.1 적용과 주요내용

eUCP 1.1은 UCP 600과 함께 전자식 제시를 위한 것이지만, UCP 600 조항의 대부분은 종이서류를 대체하는 전자식 제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또 전자식 제시를 수용하도록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도 아니한다. 즉, UCP 600상의 용어가 eUCP 1.1상에도 있으면, 이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한 UCP 600상에 규정된 모든 경우가 전자식 제시에 적용된다(제e3조 a항).

eUCP 1.1의 효력은 신용장상에 “eUCP 1.1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는 경우에, UCP 600의 보칙으로서 이에 적용된다(제e1조 b항). 특히 신용장상에는 반드시 eUCP의 적용가능한 규칙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의 개설 또는 변경일자에 유효한 규칙번호에 따른다(동조 c항).

eUCP 1.1이 적용되는 신용장(eUCP 신용장)에는 UCP 600의 명시적인 삽입이 없더라도 UCP 600의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eUCP 1.1과 UCP 600의 규정이 상충될 경우 eUCP 1.1이 우선한다(제e2조 a항과 b항). 그러나 신용장이 UCP 600에 준거한다는 사실만으로는 eUCP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타 eUCP 1.1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eUCP 신용장은 전자기록 또는 종이서류의 제시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정소를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기록은 별도로 제시될 수도 있으나 이와 동시에 제시될 필요는 없다(제e5조).

② 전자기록이 외부시스템이나 접속공간(hyperlink)을 참조하도록 표시된 경우, 그 외부시스템이나 접속공간상의 전자기록도 심사대상이 되며, 심사시점에 이들 외부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는 서류의 하자로 본다(제e6조).

③ 서류심사의 기간은 수익자의 완료통지가 수령된 다음의 은행영업일에 개시된다. 또 은행이 전자기록의 제시를 거절하였으나, 거절통지일로부터 제30일력일까지 제시인의 처분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는 반송하되 전자기록은 아무런 책임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다(제e7조).

④ 전자기록상에 발행일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송부일자를 발행일자로 보며, 또 전자기록상에 달리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송부일자를 수령일자로 본다(제e9조). 특히 운송관련 전자기록상에 선적일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는, 전자기록의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제e10조).

⑤ 은행은 수령한 전자기록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시인에게 통지하여 이를 재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전자기록이 제30월력일까지 재제시되지 아니하면, 전자기록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e11조).

⑥ 은행은 전자기록의 외관상 진정성만 점검하고, 이외의 송부인의 신원, 정보의 출처, 완전성과 불변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e12조).

4. UCP 600과 UCC 적용관계

(1) UCP 600과 UCC의 차이점

미국은 독자적인 신용장법(UCC 제5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신용장거래를 시작할 때에는 UCP 600과 UCC 규범체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① UCP 600은 서류심사의 엄격일치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대체로 상당일치성(substantial compliance)의 규칙도 인정하는 입장에 있는 반면에(제14조 d항 등), UCC는 엄격일치성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다(제5-108조 a항).

② UCP 600은 어떠한 행위양식을 국제표준은행관습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최종판단을 은행실무가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반면에(서문), UCC는 그 최종판단을 법원(courts)에 맡긴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제5-108조 e항).

③ UCP 600은 지방·지역관습을 국제관습의 법원(source)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UCC는 지방·지역관습도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다.³¹⁾

(2) UCC 제5편상의 준거법기준

미국과의 신용장거래에서는 준거법의 선택방향에 따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UCC 제5-116조의 준거법조항을 중심으로 하여 신용장거래에서 준거법 선택의 우선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은행의무는 신용장·확인·통지·양도·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기록형식

31) James E. Byrne, "UCP 500 Explored : Standard Banking Practic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7 No. 6 (1991), p. 12.

상의 합의 또는 신용장·확인 또는 기타 약정상의 조항에 의하여 선택된 재판관할지의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법률이 선택되면 재판관할지는 당해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된다. 예컨대 한국의 개설의뢰인이 일본의 개설은행과 합의하여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미국의 법률을 선택할 수도 있다.³²⁾

②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은행의무는 당사자의 소재지, 즉 신용장상에 명시된 주소지의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 신용장상에 복수의 주소지가 명시된 경우, 동 신용장을 발행한 주소지를 당사자의 소재지로 본다.

③ 은행의무는 UCP 600 등의 국제관습이나 관례가 신용장상에 명시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한, 이러한 규칙에 적용을 받는다. 위의 ① 또는 ②의 원칙에 따라 UCC의 적용을 받으면서, 신용장상에 UCP 600 등의 국제관습이나 관례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UCC와 UCP 600 등의 국제관습이나 관례가 상호 충돌한다면, UCC 제5-103조 c항에 열거된 변경불가능한 조항³³⁾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UCP 600 등의 국제관습이나 관례가 우선한다.

즉, 미국에서도 신용장상에 UCP 600의 준거문언이 있으면, 신용장분쟁의 최종판단은 UCC 표준관습보다 UCP 600 등 국제표준은행관습을 우선한다.

V. 결 언

신용장거래는 주로 국제거래인 특수성 때문에 관련국 사이의 법질서 안에서 당사자간의 자치적인 합의조항과 국제상관습이 최우선으로 존중되고 있다.

① 신용장관습 중 UCP 600은 “이 규칙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을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과 일정한 범위내의 보증신용장에 적용하며, 또 UCP 600상에 명시조항은 없으나 이와 동등한 약약의 전자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② ISBP 2007은 UCP 600이 “국제표준은행관습”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

32) James J. White and Robert S. Summers, *Uniform Commercial Code*, 4th ed., Vol. 3, West Publishing Co., 1995, pp. 125~126; UCC Sec. 5-108 Comment 8.

33) “변경불가능한 조항”이란 본법의 적용범위, 신용장의 독립성, 개설인·신용장의 정의, 영속적 신용장의 시효, 신용장 대금양도에 대한 개설인 면책, 신의성실·주의의무, 개설인·개설의뢰인·지정인의 대위권의 전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기 때문에, UCP 600 신용장상에 별도의 삽입이 없어도 이에 적용할 수 있다.

③ ISP98을 보증신용장 등에 적용하려면, “이 규칙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어야 하며, 또 URDG를 이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러한 준거문언이 있어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④ 유엔보증협약을 보증신용장 등에 적용하려면, 지급확약이 국제적이고 보충개설인의 영업소가 채약국내에 있어야 하며, 또 이 협약의 적용배제가 없어야 한다. 기타 이 협약에 따른다는 준거문언이 있는 경우도 적용할 수 있다.

⑤ URR 725를 적용하려면, UCP 600 신용장상에 별도의 보상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이 경우 신용장상에 URR 725에 따르는지의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또 보상수권상에도 “이 규칙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⑥ eUCP 1.1을 적용하려면, 신용장상에 적용가능한 규칙번호와 함께 “eUCP에 따른다”는 명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UCP 600은 자동으로 적용된다.

⑦ 미국법의 경우 UCC 제5편에 의거 신용장상에 합의된 재판관할지의 법률,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 소재지의 법률에 적용을 받으며, 또 UCP 600 등의 국제관습이나 관례가 신용장상에 삽입되어 있으면 이를 우선한다.

결국 신용장거래에서 준거규범의 선택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으며, 나아가 당사자간에 UCP 600 등의 합의가 없거나 기타 준거규범의 선택이 없더라도, 이들 관습간의 상호작용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UCP 600과 기타 국제표준관습들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석하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iveness among the International Practices of the Credit Transactions

Seo, Jung Doo

In this article, I have reviewed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mercantile customs, their preferential application, the developing status of the credit practice, the effectiveness and relationship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e.g. UCP 600 and ISBP 2007, ISP98, URR 725, eUCP 1.1. and the like,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 autonomous agreements between the credit parties and the international practice on the credit transaction are respected above all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its transaction.

When we want to apply to a letter of credit by the international rules – UCP 600, ISP98, URDG, URR 725 and eUCP 1.1, we must indicate expressly in the text of the credit that it is subject to the respective rule. But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2007 revised by the ICC is applicable to without its indication in case of the UCP 600 credit.

On the other hand, the UN Convention on Guarantees and Standby Credits applies to an international undertaking referred to in its article 2, (a) if the guarantor/issuer is in a Contracting State, or (b) i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unless the undertaking exclude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is Convention applies also to an international credit not falling within its article 2, if it expressly states that it is subject to this Convention.

Key words : UCP 600, Credits, ISBP, URDG, ISP98, URR, eUCP

참 고 문 헌

- 서정두, “신용장거래에서의 일치성 판단에 관한 ‘표준관습’의 해석”, 「무역상무연구」 제11권, 한국무역상무학회, 1998. 2.
- 양영환·서정두, 신용장사례연구, 삼영사, 1995.
- 오원석·허해관·김중년 역(Roy Goode 저), 청구보증통일규칙 가이드, 두남, 2008.
- Bianca, C.M. and Bonell, M.J.,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Giuffrè · Milan, 1987.
- Byrne, James E., “UCP 500 Explored : The Standard of Care in Documentary Examination - Standard Banking Practice, *Letter of Credit Update*, Vol. 7 No. 6 (1991).
- Dolan, John F., *The Law of Letters of Credit - Commercial and Standby Credits*, Rev. ed., Warren · Gorham & Lamont, 1996.
- Erdemol, Haluk, “A Summary of the Updated ISBP”, *Insights into UCP 600*, ed. by Ron Katz, ICC Publication No. 682, 2008.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and UCP 500”, *Banking Law Journal*, Vol. 114 No. 1 (1997).
- Honnold, John O.,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2nd ed., Kluwer Law & Taxation Publishers, 1991.
- ICC, *Collected DOCDEX Decisions (1997-2003)*, Publication No. 665.
- ICC, *Commentary on UCP 600*, Publication No. 680, 2007.
- ICC, *ICC Banking Commission Collected Opinions (1995-2001) on UCP 500*, Publication No. 632.

- ICC, *ICC Banking Commission Unpublished Opinions (1995-2004)*, Publication No. 660.
- ICC,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Publication No. 645, 2003 and Publication No. 681, 2007.
- ICC,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ISP98)*, Publication No. 590, 1998.
-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489, 1991.
- ICC,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 Version 1.1*, Publication No. 600, 2006.
- ICC, *UCP 500 + eUCP*, Publication No. 500/2, 2002.
- ICC, *Uniform Rules for Bank-to-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Publication No. 525 1995 and Publication No. 725, 2008.
- Kats, Ron, "Editor's Note, ISBP 681 approved unanimously", *ICC DCINSIGHT*, Vol. 13, No. 3, 2007. 7-9.
- Kozolchik, Boris,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in the Americas*, Matthew Bender & Co., 1976.
- Kritzer, Albert H., *Guide to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90.
- Nilson, Åke, "In Support of Electronic UCP Revisions", *Insights into UCP 600*, ed. by Ron Katz, ICC Publication No. 682, 2008.
- Sebban, Guy, *Foreword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ICC Publication No. 681, 2007. 6.
- Smith, Donald R., "ICC Project on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ICC Documentary Credits Insight*, Vol. 6 No. 3, Summer

2000.

Smith, Donald R., "Standard Banking Practice approved",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Taylor, Dan, *Afterword -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Publication No. 681, 2007. 6.

Turner, Paul, "Standard Banking Practice' and the UCP", *ICC DCINSIGHT*, Vol. 8 No. 4, 2002. 10-12.

White, James J. and Summers, Robert S., *Uniform Commercial Code*, 4th ed., Vol. 3, West Publishing Co., 1995.

Wunnicke, B., Wunnicke, D.B. and Turner, P.S.,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2nd ed., John Wiley & Sons, Inc., 1996.